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6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유기홍·서영교·안민석

윤영덕 • 조오섭 • 권인숙

임호선 · 김철민 · 유정주

서동용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사립학교가 보유한 기본재산 중 토지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세는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이러한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기관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근거가 「지방세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함(안 제1 06조제1항2제3호아목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	3
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	
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	
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아. 국민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
<u>아</u> . (생 략)	<u>자</u> . (현행 아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